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헌법

및

규칙

[2010 년 채택]

PO Box 2110
150, route de Ferney
1211 Geneva 2,
Switzerland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WCRC)

헌법

전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며 머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복음이 구현되었다.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지체들에게 풍성한 삶과 영적 활력을 주신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에 속한 교회들은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 커뮤니언의 회원들은 주권자 하나님 아래 전 세계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의 세례를 공유하는 하나의 거룩하고 공변되며 사도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

제 1 조 – 명칭 및 계승

본 기관의 명칭은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이다. 본 기관의 명칭은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다음과 같다.

Communion mondiale d'Églises réformées (CMER) 꼬뮈니옹 몽디알르 데글리즈 레포르메

Weltgemeinschaft Reformierter Kirchen (WGRK) 벨트게마인샤프트 레포르미르터 키르켄

Comunión Mundial de Iglesias Reformadas (CMIR) 코무니온 문디알 데 이글레시아스 레포르마다스

개혁교회들의 에큐메니칼 연합체인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개혁주의에큐메니칼협의회(Reformed Ecumenical Council)와 세계개혁주의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그리고 WARC 의 전신을 계승한다.

제 2 조 – 기초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기초는 마땅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을 증거한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칼 신조들과 종교개혁의 역사적 신앙고백서들에 표명되었고 개혁주의 공동체의 삶과 증거를 통해 지속된 개혁주의 정체성 구현에 헌신한다.

제 3 조 – 정체성

개혁주의 고백서들의 유산을 온 교회 갱신을 위한 선물로 활용하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교회 연합체로서

A. 세례와 회원권, 강단교류와 성찬교제, 그리고 사역과 증거의 상호인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의 선물을 확언한다.
B. 개혁주의 신학을 현대 기독교적 증거를 위해 해석한다.
C.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기독교 예배와 영성 생활의 갱신을 권장한다.
D. 예배, 증거, 봉사, 및 정의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협력하는 헌신을 갱신함으로써 연합선교, 선교갱신, 그리고 선교위임을 촉진한다.
E. 리더십 개발과 언약공동체 양육을 장려한다.
F. 대화와 사역협력을 통하여 다른 에큐메니칼 기관들과 다른 전통의 교회들과 더불어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한다.

제 4 조 – 가치

A.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우리가 천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보여주고 실천하며, 그 사역을 통해 모든 회원교회가 각자의 은사를 공유하도록 만들며, 세상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드높이고 그것에 헌신하려고 노력한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사랑과 돌봄으로 회원들을 섬기며 상호 간의 후원과 양육을 장려한다.
B.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그 직제와 활동으로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적 차이점으로 인한 분열의 힘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다른 어떤 연유로, 즉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또한, 어떤 개인이나 교회도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지배를 주장하거나 행사해선 안 된다.
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창조의 구속, 회복, 및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커뮤니언은 서로에게서 세례의 은사를 인정하는 성경적 소명과 사역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보전을 함께 증거하라는 소명을 천명한다.

제 5 조 – 사명과 목적

A.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회원교회들을 도와
1. 회원교회들 사이에 이해와 공동체를 확장하고 심화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각자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돕는다.
2. 회원교회들이 하나의 하나님 선교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지원하고 위임하고 도전하는 상호의존적 선교 공동체로 변화되도록 촉진한다.
3. 모든 연령대의 모든 회원이 교회 생활과 그 공적 증거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하고 공정한 참여를 하도록 촉구한다.
4. 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온전하고 공정한 협력을 고취한다.
5. 교회와 사회 안에서 섬김의 봉사를 장려하고 고취한다.

B.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또한 에큐메니칼 운동과 세계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1. 경제,환경적 정의와 세계적 평화 및 세계 속의 화해를 고취한다.
2. 세계 어디서든 종교적, 시민적, 기타 인도적 권리들이 위협받고 있는 곳에서 그 권리들을 고취하고 변호한다.
3. 세계 곳곳에서 구제와 유지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빈곤 근절에 집중한다.
4. 교회 연합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을 제공한다.

제 6 조 – 회원권

<u>구성</u>

A. REC 와 WARC 의 현 회원교회들은 모두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회원이 될 것이다. 통합 당시 양 단체에서 회원권이 정지당한 교회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에서도 계속 정지 상태에 처하게 된다.

B. 개혁주의, 장로교, 회중주의, 왈도파, 및 기타 최초 종교개혁과 연합교회 전통에 속한 다른 교회들도 이 헌법을 인정한다면 회원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C. 회원교회들은,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여러 사역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 조치와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공동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커뮤니언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 개혁주의 정체성을 천명하면서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회원교회들을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교회들의 친교회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다. 이 준회원들은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교제와 프로그램을 공유하되, 정치적 의결권이 없이 호혜적 근거에 따라 참여하며, 그럼으로써 에큐메니칼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 가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E.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교회(들)이 세웠거나 그 신앙기초나 활동이 역사적 개혁주의 고백서들과 일치하는 기관은 의결권이 없는 제휴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다.
F.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회원권 때문에 회원교회의 자율성이 제한을 받거나 다른 교회나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관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G.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회원들은 매년 그 교회의 자원과 회원 수를 반영하는 재정 기부를 통해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사역을 지원해야 한다. 총회나 실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교회, 준회원 및 제휴회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기부금 요구액을 정해주어야 한다.

<u>절차 문제</u>

H. 회원권 신청은 늦어도 총회 회의 6 개월 전까지 총무 사무실로 접수해야 한다. 회원권 허입은 실행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다른 회원교회들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총회는 새 회원들을 투표수의 3 분의 2 과반수로 인준해야 한다. 새 회원은 자기 회원권을 인준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I. 회원교회는 총무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원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제출하도록 권고받게 될 것이다.
J. 실행위원회는 회원교회가 본 헌법의 기초, 가치, 또는 의도와 목적을 훼손하는 조치를 했거나 반복적으로 본 기관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그 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한 회원교회 이상이 문제 교회에 대한 염려를 과거에 제기한 적이 있으면 그러한 조치를 실행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회원교회의 회원권을 정지시키라는 제안은 실행위원회 회기로부터 최소 6 개월 전에 실행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회원권 정지 제안을 받은 실행위원회는 조사를 해야 한다. 임원들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조사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그 절차는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실행위원회는 반드시 문제 교회에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에야 최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그러한 조사가 완료된 후, 실행위원회는 참석 회원들의 투표수 3 분의 2 로 문제 회원교회의 회원권 정지를 결정하거나 그 소송을 다음 총회로 넘길 수 있다. 실행위원회가 회원권 정지를 결정해도, 실행위원회의 후속 회의에서 언제든지 그것을 해제할 수 있다.
    5. 회원교회가 총회 회의에서 회원권이 정지되더라도, 그 회원권 정지는 후속 총회 회의에서 언제든지 현직 실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는 그 회원교회와 회원권 정지의 원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6. 3 년 연속 회원 기부금을 내지 못하고 사무국에 그 이유를 해명하지 않는 회원교회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실행위원회에 의해서 회원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회원 특권을 상실한 회원교회는 비활동 회원으로 간주한다. 비활동 회원교회는 총회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는 있지만,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없다. 비활동 회원은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7. 회원권이 정지된 회원교회는 총회의 본회의에 참관인들을 보낼 수 있지만, 의장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총회 본회의에서 의결권이나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회원권이 정지된 회원교회는 그 기간에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에 대해 아무런 재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7 조 – 총회

A. 총회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주된 통치 기구이다. 회원교회 절반에 한 교회가 더해진 대표들이 참석하여 정족수가 확보되면,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총회가 법적으로 구성된다.
B. 총회의 임무
    1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
    2 헌법과 규칙을 채택하고 수정한다.
    3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채택한다.
    4 직원들과 실행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한다.
    5 회원교회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숙고한다.
    6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인준한다.
C. 총회가 그 조직과 기관활동에 관해 내린 결정들은 구속력을 가진다.
D. 회원교회들의 생활과 증거에 관련된 총회의 결정들은 자문의 성격을 띤다.

제 8 조 – 총회 회의

A. 총회는 보통 7 년에 한 번 모인다.
B. 실행위원회는 회원교회 수 최소 5 분의 1 의 요청으로 총회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C. 총회 회의의 시간, 장소 및 프로그램은 실행위원회가 결정한다.
D. 총회는 실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 업무 행위에 대한 절차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제 9 조 – 총회 구성

A. 총회 참석자들은 대의원, 준대의원과 제휴대의원, 에큐메니칼 대의원, 자문위원, 참관인, 내빈, 방문자 등이다.
B. 회원교회들은 아래 계획대로 각 교단의 세례교인 수에 근거하여 대의원을 임명할 자격이 있다.

1. 교인이 200,000 명 이하인 교회들은 대의원 3 명
2. 교인이 200,001 에서 300,000 명인 교회들은 대의원 4 명
3. 교인이 300,001 에서 500,000 명인 교회들은 대의원 5 명
4. 교인이 500,001 에서 750,000 명인 교회들은 대의원 6 명
5. 교인이 750,001 에서 1,000,000 명인 교회들은 대의원 7 명
6. 교인이 1,000,001 에서 1,500,000 명인 교회들은 대의원 8 명
7. 교인이 1,500,001 에서 2,000,000 명인 교회들은 대의원 9 명
8. 교인이 2,000,000 명 이상인 교회들은 대의원 10 명

C. 한 교회에서 두 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견할 때, 안수사역자가 그 절반을 넘으면 안 되며 대표단의 성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한 교회에서 두 대의원을 파송할 때, 적어도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한 교회에서 네 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할 때, 최소한 절반이 여성이어야 하며 최소한 한 명의 대의원은 총회개시일 기준으로 30 세 이하여야 한다.
D.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직무 기간에 개최되는 모든 총회에서 (의결권을 보유한) 직무상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
E. 대의원들은 총회의 모든 회기에서 의결권과 발의권 및 재청권을 가진다.

제 10 조 – 실행 위원회

A.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선출한 (여섯(6) 명의 임원을 포함한) 스물두(22) 명의 위원들로 이뤄진다. 각 지역 협의회의 총회장, 회장, 또는 의장은 실행위원이 되어야 한다. 총무는 (의결권이 없는) 직무상 위원이 되어야 한다. 실행위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정족수가 확보되면,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행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된다.
B. 실행위원회는 회의에 실행간사들을 초청하여 고문 자격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C. 실행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특정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규칙의 조항에 따라 대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D. 실행위원회는 매년 모여야 한다.
E. 의장과 총무가 실행위원회 회기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편, 이메일, 텔레콘퍼런스, 또는 다른 전자 수단을 활용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요구되는 과반수(절반 더하기 일)는 실행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에 기초한다.
F. 실행위원회의 임무

    1.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서들과 위원회, 그리고 커미션을 조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회 회의 사이에 진행해야 할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2. 총회 회의 사이에 의장이나 총무에게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을 대변할 권한을 부여한다. 실행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을 대변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3. 본 헌법과 규칙 곳곳에 지정된 임무와 총회가 실행위원회에 위탁한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
    4. 연례 재정 보고서를 승인하고 연례 예산서를 채택한다.
    5. 총회 회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임원들의 공석을, 규칙에 지정된 대로, 회원들 가운데서 충원한다.
    6. 총무를 선출하고 실행간사들을 임명한다.
    7. 지역 회원교회들과 협의하여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회원 허입과 회원권 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차기 총회에 인준안으로 상정한다.

제 11 조 –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직원들

A. 총회는 총회에 파견된 대의원 중에서 의장 한 명과 부의장 네(4) 명을 선출해야 한다. 총회는 또한 회계를 선출해야 한다. 이 선출된 임원들은 임명받은 순간부터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임직 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B.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직원들의 권한

    1. 실행위원회 회의 안건들을 승인한다.
    2.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부서 간 사역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3. 총무에게 조언과 방향을 제공한다.
    4. 업무활동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실행위원회에 제출한다
    5.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자산을 감독한다

C. 의장(혹은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 총무, 또는 회계 중 누구든 2 인이 함께 하면 모든 법정 등록, 은행계좌 개설, 및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다양한 법적 활동을 위해 서명할 권한을 가진다.

제 12 조 – 총무

A. 총무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최고행정관(CEO)이며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대해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사역을 총괄하고 편성할 책임을 진다.
B. 총무는 7 년 임기를 섬기고 7 년 임기를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7 년 임기의 중간 시점에 두 번째 7 년 임기에 총무를 임명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종합업무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업무평가는 실행위원회가 임명한 이들이 수행한다.
C. 총무는 총회의 소집과 보고, 및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D. 총무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인사를 감독해야 하며 간사진의 적절한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E. 모든 출판물은 총무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실행간사들

A.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업무 활동을 위해 실행간사들을 임명한다.
B. 시기별로 재직하는 실행간사의 숫자와 그들의 책임 범위는 총무의 권고에 따라 실행위원회가 결정한다
C. 실행간사들은 5 년 임기를 섬기고 나서 차기 5 년 임기를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5 년 임기의 중간 시점에 두 번째 5 년 임기를 섬길 실행간사를 임명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종합업무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업무평가는 총무가 수행한다.

제 14 조 – 재정

A.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회원교회, 준회원 및 제휴회원들의 기부금과 개인, 회중, 기관, 및 기타 출처에서 나온 자발적 기증을 통한 재정 후원을 받는다.
B. 회계와 총무는 연례 예산의 준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례 예산은 실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재정 계좌는 매년 실행위원회가 승인한 감사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실행위원회는 매년 감사를 마친 계좌를 채택해야 한다.

제 15 조 – 부서, 위원회, 사무실, 및 커미션

A. 총회나 실행위원회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서와 위원회 및 커미션을 조직할 수 있다.
B. 모든 위원회 혹은 커미션은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다.
C. 부서들과 사무실들은 총무를 통해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고취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독립 단체가 아닌 상호의존적으로 운영된다.

제 16 조 – 지역 협의회 조직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회원교회들 사이에 가능한 한 가장 친밀한 공동체와 협력을 고취하고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전체 사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총회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의 회원교회들이 지역 협의회를 조직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지역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임명한 행정 조직을 통해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총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A. 지역의 수와 경계, 그리고 명칭은 총회나 실행위원회가 지역 회원교회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B. 지역 협의회의 조직은 지역 소속 회원교회들에 의해서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헌법과 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각 지역 협의회가 채택한 자체 규칙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C. 각 지역 협의회는 이따금 그 지리적 구역 안에서 모여야 하며,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규칙대로 직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D. 각 지역 협의회는 총회장, 회장, 또는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E. 각 지역 협의회는 그 지역 협의회를 섬길 총무와 회계를 선출한 후 실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 법적 지위

A.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스위스 민법전 제 60 조 이하에 따라 협회로 조직된, 국제적인 비정부, 비영리 기관이다. 사무실은 스위스 제네바에 등록되어 있다. 본 협회가 해산된다면 남은 자산은 기존 부채를 갚은 뒤 회원교회들이나 그 계승 단체에 비례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B. 미국에 등록된 WCRC 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국제적 자매기관이다. 이 두 국제적 비정부 비영리 면세 기관들은 똑같은 회원들을 보유한다. 두 자매기관은 똑같은 총회와 실행위원회와 임원들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

제 18 조 – 개정

A. 헌법 개정안이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되기 6 개월 전까지, 각 회원교회와 실행위원회 위원과 지역 협의회에 전달이 되었다면, 본 헌법은 총회의 어느 회의든 거기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에서 3 분의 2 의 찬성으로 수정될 수 있다.
B. 규칙의 개정은 총회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최소한 24 시간 이전에 공고되었으면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에서 다수결로 이뤄질 수 있다. 규칙은 또한 총회 회의 사이에 실행위원회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변경은 다음 총회에 상정되어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WCRC)

규칙

I. 총회

A.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실무위원회로서 사역해야 한다.
B. 의장은 실행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대의원 중에서 필요한 만큼 상설위원회들과 작업그룹들을 임명해야 한다.
C. 총회 회의 참석자의 지위와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각 회원교회의 의결권 대의원 숫자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다.
    2. 준대의원은 준회원 기관을 대표하는 자다. 준대의원은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3. 제휴대의원은 제휴 기관을 대표하는 자다. 제휴대의원은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4. 에큐메니칼 대의원은 에큐메니칼 결연 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을 대표하는 자다. 에큐메니칼 대의원들은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5. 내빈은 총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개인들이다. 내빈은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6. 참관인들은 회원교회의 대표들이나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연합체의 대표들이다. 참관인들은 총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7. 자문위원은 임원들의 초청을 통해 총회나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자신이 참여하는 목적에 직결된 문제에 관해 청중에게 발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다. 자문위원은 그 특정 문제에만 국한된 발언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없다.
    8. 방문자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총회의 공개 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이다. 방문자들은 발언권이나 발의권, 의결권이 없다.

II. 실행 위원회

A. 선거

1. 총회는 총회에 파견된 대의원 중에서 지리적 분포, 문화,교단적 다양성, 성별, 연령, 및 경험을 고려하여 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2. 총회는 총회에 파견된 대의원 중에서 지리적 분포, 문화,교단적 다양성, 성별, 연령, 경험, 및 지역 협의회의 자문을 고려하여 실행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3. 실행위원회 위원들은 임명받은 순간부터 후임자들이 선출되어 임직 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4. 실행위원회의 위원들은 두 번의 임기까지만 봉사할 자격을 가진다.
5. 총회는 실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 명 이하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그중 두 명은 30 세 미만이어야 하며, 적어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천 절차는 지리적 분포, 문화적, 교단적 다양성,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6. 공천위원회 위원들은 임원이나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공천위원회는 지역협의회 대의원들이 추천한 후보 명단을 받고 숙고한 후 자체 공천자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7. 공천위원회는 임원과 실행위원회 위원의 직위에 추천하는 공천자명부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천위원회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어느 후보든 그를 대신하는 후보를 청중석에서 추천할 수 있다.
8. 총회 임원들과 실행위원회 위원들의 선출은 모든 후보를 소개한 후 24 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해야 한다.
9. 실행위원회의 각 위원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이해관계 충돌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서는 서명을 받아 총무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10. 통상 실행위원회에 선출된 대의원들은 총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고 기대된다.

B. 대리위원

1. 실행위원회의 어느 위원이 실행위원회의 특정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면, 의장과 총무가 적절한 협의를 거쳐 그 위원과 같은 지역 출신의 대리위원을 임명하여 그 특정 회의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도록 할 수 있다.
2. 실행위원회는 교회나 기관들이 임명한 대표들을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그렇게 초대된 대표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C. 면직

1. 임원이나 실행위원회 위원은 다른 임원이나 위원이 임무 수행에 실패했다고 여긴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2. 실행위원회는 혐의 내용을 듣고 적합한 증거를 숙고하고 피고인의 답변을 들은 후 피고인을 경책하거나 정직시키거나 제명할 수도 있고, 계속 근무하도록 선고할 수도 있다. 위반 행위의 횟수보다는 범법의 심각성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한다.
3. 임원이나 실행위원회 위원이 소속 교회의 교단 재판을 통해 특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실행위원회가 그 고소(공식 혐의), 판단, 불신임(판결, 선고)에 대한 공식 문서를 기록한 후 그 직위나 회원권이 공석이라고 선고할 수 있다. 그 회원에게는 서면으로나 직접 (자비 부담으로) 실행위원회에 응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위원회는 그 개인을 면직 혹은 정직시킬 수도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D. 공석

실행위원회 위원이 사망했거나 총무에게 사표를 제출했거나 실행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면직되었거나 장기간 불참석하여 그 직위가 공석이 되면, 실행위원회는 그 공석을 다음 방식으로 충원할 수 있다.

1. 의장직이 공석이 되면, 실행위원회가 부의장 중에서 선거를 통해 회장직을 충원해야 한다.
2. 부의장직이 공석이 되면, 실행위원회가 실행위원 중에서 선거를 통해 충원해야 한다.
3. 회계직이 공석이 되면, 실행위원회가 그 직위를 충원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4. 실행위원회의 일반직이 공석이 되면, 실행위원회가 이전 총회에 파견되었던 대의원 중에서 지리적 분포, 문화,교단적 다양성, 성별, 연령, 및 경험을 고려하여 선거를 통해 공석을 충원할 수 있다.

E. 회의

1. 실행위원회는 1 년에 최소 1 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실행위원회의 이전 회의에서 정하거나 헌법 제 10 조 E 항에 정해진 대로 회람 결정을 통해 결정한다. 이것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과 총무가 실행위원회의 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2. 의장과 총무는 실행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실행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특별 회의를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3. 정족수는 실행위원회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III. 재정

A. 실행위원회는 교회들에 비례적인 재정 기부금을 제안할 수 있다.
B.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연 예산에 포함된 지출 이외에 어떤 기금이든 그것에 대한 지출 제안서는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예외적인 경우에, 총무는 의장과 회계와 협의하고 그들의 승인을 받아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재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D. 시기적절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면, 실행위원회는 직원들의 추천에 따라 우편투표, 텔레컨퍼런스, 또는 다른 전자 수단으로 예산안 채택에 관해 투표할 수 있다.
E. 회계와 재정 간사는 실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F. 의장, 총무, 회계, 및 다른 직원이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 그들의 비용은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기금에서 충당될 것이다.
G. 총회에 파견된 대의원들의 비용과 총회에 참석하는 실행위원회 위원들의 비용은, 사전에 지원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의 소속 교회가 지급해야 한다.
H.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확립된 행정 지침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비용을 지급할 것이다.
I. 각 지역 협의회는 총무에게 연례 재정감사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